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69
------------------	-----

제출년월일 : 2005. 3.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21세기 정보화시대 인터넷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수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총칙
-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전자우편ID 보급 및 관리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법률 제 7128 호 : 2004. 1. 29. 개정)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첨부 : 1.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충청북도 정보-773호)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을 총칭한다.
3. “서버”라 함은 네트워크상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리 기능을 갖는 컴퓨터를 말한다.
4. “클라이언트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라 함은 서버 또는 주전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상에서 자료를 열람, 입력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6. “ID”라 함은 Identifier의 약자로 인터넷에 연결된 각각의 이용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자신만의 고유한 문자열, 숫자열의 조합을 말한다.
7.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8. “개인정보” 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9.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게시판 및 열린마당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보급 및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분야별 담당관리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

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시스템은 통합 구축·관리하고, 분야별로 별도 구축·관리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번호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 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 보급 및 관리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①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시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보안) 자료관리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리에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호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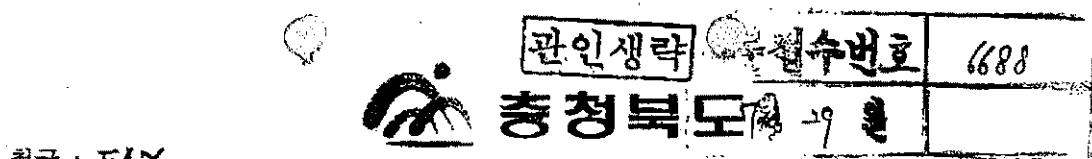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28호}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서번호 정보 12410 - 913

시행일자 2000. 7. 29. ()

(경유)

수신 대 01 ~ 12

참조 정보화관련부서장

선 람	2000. 7. 29		지 시
접 수	일자		결 재 공 람
	시간 2000. 7. 29		
	번호 2401		
	처 리 과자치행정과		
	담당자 날이		
심 사 자		심사일	

제목 :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송부

- 행자부 자정 12410-584(2000. 7. 27)호의 이월입니다.
- 시군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복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시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라며,
- 각 시군에서는 조례제정 완료시 그결과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전결 정보통신과장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2 0 0 . 7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자치정보화담당관실)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달하고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ID 보급 등
-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 제시

□ 추진경위

-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관련 자료 취합·분석 : 2000. 4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초안작성 : 2000. 5 ~ 6
- 관련부서(행자부), 시도 및 시군구에 표준안 의견수렴 : 2000. 7

※ 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2000. 6월현재)

현 황	황	계	시도	시군구	비고
기 관 수	248	16	232		
홈페이지구축	245	16	229		잔여 3개기관도 현재 구축중임
관련규정제정	37	10	27		

□ 조례표준안 구성내용

장 별	조문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9조(비밀번호관리)

□ 행정사항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시행
 - 각 자치단체별로 인터넷 관련 조례 제정·운영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및 시·군·구(이하 '자치단체'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 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자치단체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자치단체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자치단체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자치단체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자치단체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자치단체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② 자치단체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자치단체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자치단체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OME](#) [ENGLISH](#) [CHINESE](#) [JAPANESE](#) [SITEMAP](#)
[일반시정실](#) [무른재진](#) [사이버시정](#) [시민광장](#) [전자민원창구](#) [문화관광](#) [신입경제](#) [정보광장](#) [제천시의회](#)
[오늘의 뉴스](#) | [공지사항](#) | [입찰공고](#) | [일법예고](#) | [고시공고](#) | [신문스크랩](#) | [주로제천소식지](#) | [2004년 주요업무계획](#) | [공약추진사업](#) | [재정현황](#)

21세기 일등재진을 위한 제천시의 의지와
시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이버시정

- [오늘의 뉴스](#)
- [시정영상 뉴스\(VOD\)](#)
- [공지사항](#)
- [보도해명](#)
- [입찰공고](#)
- [입법예고](#)
- [고시공고](#)
- [신문 스크랩](#)
- [무른재천 소식지](#)
- [2005주요 업무계획](#)
- [공약추진사업](#)
- [시정100선](#)
- [재정현황](#)
- [2005년 예산서공개](#)

[Location](#) > [총](#) > [사이버시정](#) > [입법예고](#)
[검색](#)

입법예고사항

입법예고

* 제천시 지방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입법예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No. 125

148 Date : 01.31.2005 2:55PM Hit : 99

이 름 자치행정과

파일첨부 1: 제천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hwp (16 KB), Download : 35

제 목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천시공고 제 2005 - 47호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31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21세기 정보화시대 인터넷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수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총칙
-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전자우편ID 보급 및 관리

	<p>○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p> <p>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21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5184, FAX 640-5129, E-mail: kyc8431@okjc.net</p> <p>○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p> <p style="text-align: center;">[목록보기]</p>
--	--

열린시장실 | 푸른제천 | 사이버시정 | 시민광장 | 전자민원실 | 문화관광 | 산업경제 | 정보광장 | 제천시의회



Copyright © 2002, Jecheon City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보호방침] [오시는길] [행정전화번호]



(우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12-2) ☎(043) 645-7101, ☎ 640-5114 E-

Webmaster@okjc.net